모잠비크 원유가스 탐사개발 참여와 관련한 법제 연구

오정환

1. 서설

아프리카 원유가스의 탐사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관심 있는 회사들이 사업을 함에 있어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법제 등의 규제 문제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법제가 제대로 완비되지 않거나 모순되거나 때론 쉽게 변경이 이뤄져 탐사개발 사업의 경제성 및 안정성에 위험이 되기 때문이다.[1] 이와 같은 탐사개발의 규제적 위험은 모잠비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세계은행 그룹의 국제금융공사가 발간한 모잠비크 내 사업에 대한 평가 자료에 의하면 모잠비크 내 사업의 편이성은 세계 183국가 중에서 126위에 해당하고 투자자 보호 면에 있어서는 44위를 하였고, 계약의 강제집행의 용이성은 132위에 그쳤다.[2] 그런 측면에서 보건대, 모잠비크에서 원유가스의 탐사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모잠비크가 갖고 있는 고유의 법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사업 구조를 짜서 탐사개발 사업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모잠비크는 남아프리카의 북동쪽에 인접한 국가로 한반도 면적의 3.6배 정도의 크기에 인구는 2,180만 정도에 이르고, 1975년 6월 26일 포르투갈로부터 독립을 하였다. 포르투갈의 식민지배의 영향으로 법체계가 포르투갈 법에 근거하고 있다. 독립 이후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유지하다가 1980년대 말부터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전환하였다.

1) PriceWaterhouseCoopers(PWC), The Africa Oil and Gas Survery 2010, Energy & Utilities, p. 4.
2)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Doing Business 2011", Mozambique, Comparing Business Regulation in 183 Economics, IFC, 2011, p. 2.

이후 1993년 신투자법을 제정하고 1994년 산업자유지역을 설치하는 등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2006년 화폐개혁을 실시하였고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 7-13%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다. IMF에서는 어려운 세계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1년 모잠비크 경제성장률을 7.5%로 전망하고 있다.[3)]

모잠비크는 석탄, 알루미늄, 석유 등의 광물자원이 풍부한데, 그 중 알루미늄이 수출품목의 59%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4)] 원유가스에 대해 살펴보면 원유는 2000만 배럴 정도 매장돼 있고, 천연가스는 최근 탐사 활동의 증가로 확인되는 매장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바 50 tcf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천연가스는 대부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수출하는 반면, 가솔린 등을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5)] 2004년 2월부터 Temane 유전에서 1일 1000배럴의 컨덴세이트가 생산되고 있고, 2015년부터 Inhassoro 유전에서 1일 2500배럴의 경질유가 생산될 예정이다.[6)] 천연가스는 Temane 유전에서 2004년 2월부터, Pande 유전에서 2009년 6월부터 각 생산을 시작하여 남아프리카 공업지대 및 모잠비크 국내에 공급되고 있는데, 2013년 기준으로 연간 350만 톤이 생산될 전망이다.

현재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이탈리아 ENI 등과 함께 모잠비크 동쪽 해상에 위치한 Area-4 광구에서 탐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11년 11월 현재 매장량이 22.5 tcf 이상임을 탐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고,[7)] 수도 Maputo 지역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모잠비크에서 원유가스의 개발생산에 참여할 때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법령을 다루고자 한다. 모잠비크의

3) 해외자원개발협회, African Newsletter 제48호 3면.
4) IPEX(Instituto para a Promoção de Exportaõçes) 자료 참조.
5) IPEX 자료 참조.
6) 인도 Bharat PetroResources사가 test well을 시추할 예정이다. 해외자원개발협회, African Newsletter 제51호 18-19면.
7) 해외자원개발협회, African Newsletter 제56호 25면.

석유법령, 회사법, 금융과 세제 법령을 비롯하여 원유가스의 개발생산과 관련된 기타 법제 등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8] 특히 모잠비크 내의 원유가스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 주체와 대주은행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적 현안들을 중심으로 본고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 석유법령

2-1. 서설

모잠비크 원유가스에 대한 탐사개발 사업은 기본적으로 2001년 2월 21일 제정된 석유법(Petroleum Law, Law No.3), 2004년 8월 20일 공포된 석유사업령(Petroleum Operations Regulation, Decree No.24)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2008년 제정된 석유생산조세령(Regulation on Petroleum Tax, Decree No.4), 2005년 제정된 탐사생산 양허의 신모델계약(New Model Exploration and Production Concession Contract), 2007년 제정된 석유사업재무법(Fiscal Law on Petroleum Activities)과 채광 및 석유 촉진법(Law on Mining and Petroleum Incentives) 등이 탐사개발 사업에 적용되고 있다. 한편 2009년 모잠비크 정부는 주로 탐사 지역과 잠재매장량 등에 대한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는 석유사업 양허의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for Petroleum Operations Concessions)을 발표한 바 있는데, 모잠비크 내 원유가스 탐사개발 사업을 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각 법의 내용들이 원유가스 탐사개발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8)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 적용될 수 있는 법으로 투자법(Law on Investment)이 있으나, 동법은 원유가스의 탐사, 개발 및 생산과 광물자원의 채굴 사업부분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본고에서 제외하였다.

2-2. 석유법

2-2-1. 국가의 통제

석유법에 따르면 모잠비크 정부가 토지, 지하, 내해, 영해, 대륙붕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에 존재하는 모든 석유 자원에 대해 소유권을 갖고 개발권을 갖는다. 다만 보전지역이나 국립공원 지역 등에서는 석유자원의 개발이 제한돼 있다. 한편 원유가스 등의 석유자원 개발의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는 광물자원부(Ministry of Mineral Resources)가 있고, 원유가스의 탐사, 개발, 생산, 수송 등에 대한 규제를 총괄하는 부서로는 INP(Institute of National Petroleum)이 활동하고 있다.[9] 또한 2005년 모범탐사개발계약이 작성돼 이용되고 있다.

석유법에 의하면 모잠비크 정부는 원유가스 탐사개발에 따른 비용 지출을 변제받고[10] 다른 회사의 석유 탐사개발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사업 참여 결정은 사업권 보유자와 정부 사이의 계약 조건에 따라 사업의 어느 단계에서든 가능하다. 통상 정부의 탐사개발 사업의 참여는 국영석유회사인 ENH(Empresa Nacional de Hidrocarbonetos[11]) 또는 그 자회사를 통해 이뤄진다. ENH는 원유가스의 탐사개발, 가스 수송 및 공급 등 원유가스의 전 분야에 대해 담당하고 있고, 현재 여러 외국 석유회사들과 제휴하여 모잠비크 내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12]

석유 탐사개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충분한 기술 수준과 재정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모잠비크 회사나 외국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석유 탐사개발 사업을 수행할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 모잠비크 회사나, 모잠비크 회사와 제휴한 외국회사는 광구 취득에 있어 우선권을 갖는다.

---

9) Abdul Razk Noormahomed, "Overview of Mozambique's Natural Gas and Oil Potential", Washington, November 29- December 01, 2006. p. 5.
10) Carried-forward interest scheme이라고 한다. Couto, Graça and Associates, "Getting the deal through - oil regulation, Mozambique", 2011, p. 111.
11) Nagtional Hydrocarbon Corporation의 포르투갈어 표현이다.
12) Couto, Graça and Associates, supra, p. 111.

모잠비크 회사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모잠비크 사람이나 회사가 보유하여야 한다. 비록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모잠비크 법에 따라 설립하고 모잠비크에 탐사개발 사업의 운영 본부가 설치돼 있다고 하여도 모잠비크 회사로 인정받을 수 없다.

2-2-2. 탐사개발권 계약

석유법에 의하면 석유 탐사개발 사업은 정부와의 탐사개발권 계약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1995년 설립된 NDCH(National Directorate for Coal and Hydrocarbons)에서 현재 그 계약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석유 탐사개발 사업은 (1) 탐사, (2) 평가 및 생산, (3) 원유 및 가스 배관으로 크게 구분되고 있다. 탐사개발권은 일반적으로 공개경쟁 절차나 직접 협상에 의해 부여되는데, 직접 협상에 의한 탐사개발권 부여는 석유 사업 운영 규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2-2-2-1. 예비탐사계약

예비탐사계약을 통해 계약에서 정한 구역에 대하여 예비적 탐사와 평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 예비 탐사방법에는 지구물리학, 지구화학, 지질학, 고생물학, 지형학 등의 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탐사계약은 최대 2년의 기간으로 하고 지표 또는 해저면에서 100미터까지 시추할 권리를 갖게 된다. 탐사권자는 평가 및 생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우선적 권리를 갖는다. 다만 우선권을 갖기 위해서는 탐사계약 만료 6개월 전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 그에 따라 평가 및 생산에 대한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다.

광물자원부 장관은 예비탐사계약 등을 승인하고 예비탐사권 등을 부여할 권한을 갖는다. 예비탐사권 등의 신청은 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뤄지는데,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국적, 해당 광구, 광구의 범위,

탐사 등의 신청 대상행위, 계약의 주요 조건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해야 한다.

2-2-2-2. 탐사 및 생산 계약

탐사 및 생산 계약은 원유, 가스 등의 탐사, 평가 및 생산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 간혹 계약 내용으로 원유나 가스 배관망을 건설하고 운영할 비독점적 권리를 포함하기도 한다. 물론 기왕의 배관망이 존재하고 상업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배관망 건설 등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한편 내각위원회(Council of Ministers)는 평가 및 생산계약의 체결에 대한 승인 권한을 보유한다.

탐사 및 생산 계약은 기본적으로 8년의 계약 기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으나 최대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물론 계약 기간 동안 광구 반납의 의무를 부담한다. 계약 기간은 광물자원부 장관을 통해 국립석유위원회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계약 기간의 연장은 일정 사유로 이뤄지고 아래와 같은 제한이 따르고 있다. 첫째, 계약기간이 종료될 무렵에도 시추와 평가 업무가 완료되지 않아 그 완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는데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둘째, 평가 및 생산 기간 동안 원유가스가 발견된 경우 탐사개발권자가 작업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원유가스의 상업적 평가를 마쳤거나 적어도 평가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을 때에 한하여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모잠비크 내에서 시추되는 유정의 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 12월 2일 현재 총 126개 유정의 시추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 중 평가정이 31개, 생산정이 24개에 이른다.[13)]

2-2-2-3. 원유 및 가스 배관망 계약

13) Arsenio Mabote, "Overview of the Upstream Petroleum Sector of Mozambique", UK-Mozambique Investment Forum, December 2, 2010.

배관망 계약은 원유가스의 수송을 위한 배관을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한다. 물론 원유가스 평가 및 생산 계약에서 배관망 건설과 운영에 대해 이미 규정한 경우에는 별개의 계약으로 체결할 필요가 없다. 본 계약은 원유가스의 개발생산 계획과 더불어 체결되어야 한다. 통상 원유가스의 개발생산에 대한 권리는 최장 30년이므로 그 기간을 고려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내각위원회에서 본 계약에 대한 승인권도 보유하고 있다.

배관망 계약자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조건에 의거하여, 원유가스 수송을 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배관망을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물론 배관망에 여유 수송 공간이 확보돼 있어야 하고 접근이용권 인정에 있어 기술적 문제점이 없는 경우에만, 제3자의 배관망에 대한 접근 이용권을 보장할 수 있다. 배관망 건설과 운영에 관하여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원유가스 개발생산의 경우에도 역시 제3자의 접근 이용권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2-3. 석유 관련 제세 부담

원유가스 탐사개발 사업을 하는 회사는 총소득의 32%에 이르는 법인세를 부담하고 배당소득세로 총소득의 18%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부가가치세도 17%에 이르러 비교적 부담이 큰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원유가스의 개발생산으로 인해 탐사개발권자가 부담하는 로열티의 규모를 살펴보면, 원유의 경우에는 생산량의 10%이고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생산량의 6%로 세금과 비교해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자본재의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혁신적 기계류와 장비에 대해서는 가속상각을 인정해 주어 초기 운전자본의 확대를 꾀할 수 있게 해주고, 특수 장비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연 10%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또한 모잠비크 근로자들을 위한 교육비 부담에 대해서도 연 10%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으며, 공공시설과 관련된 투자비용에 대해 수도인 Maputo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가액의 110%를, 기타 지역의 투자의 경우에는 120%까지 비용공제를 인정하는 등으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

2-4. 민관 파트너십 법

모잠비크 의회는 2011. 5. 11. 민관 파트너십을 주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14] 법안의 핵심 내용은 민관 파트너십에 수반되는 위험 감소에 관한 조항이다. 법안의 취지는 계약 당사자와 정부, 시민사회, 지역공동체 간에 맺어지는 모든 협력 사업에서 창출되는 이익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관련 리스크를 줄이는 데 있다.

동법에 따르면 위험이 기술적, 상업적 능력 또는 경영능력에서 비롯되었거나 계약상 합의된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민간에 그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민간이 책임져야 할 위험으로 협력 사업의 금융과 환율에 관련된 위험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요, 공급, 자산 평가절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도 민간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반면 정치적, 제도적 부분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모잠비크 정부와 공공기관이 반드시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5. 천연가스 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

모잠비크가 아프리카에서 천연가스의 최대 생산국이 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모잠비크 정부는 2009년 11월 2일 천연가스 시장의 개발을 위한 새로운 정부정책(Resolution No. 64)을 발표하였는데, 다음은 그 주요 내용이다.

14) African Newsletter 제33호, p. 19.

첫째, 탐사개발권자로부터 공급받은 로열티 가스의 경우에는, 국가 개발에 영향이 매우 크지만 순수 상업 조건 하에서는 그 수행이 어려운 프로젝트에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모잠비크 정부는 프로젝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 가격 이하로도 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

둘째, 적절한 규정을 통해 정부는 최종 소비자에 대한 가스가격을 최소화하는 것을 보장하고 가스 공급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셋째, 모잠비크 정부는 모잠비크 천연가스 산업에 대해 국영기업의 참여를 계속하여 촉진한다.

넷째, 천연가스 개발생산권자가 생산 가스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모잠비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매수자를 선정할 때 반드시 1) 가격, 2) 수입연료 대체 효과 및 국내 소비재 생산에 대한 효과, 3) 국가 천연가스 산업에 대한 부가가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우선적 배려, 4) 국가의 사회 경제적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 효과 등의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고, 대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 회사법령

3-1. 회사형태

3-1-1. 회사의 유형

모잠비크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회사가 존재하는데,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y- Sociedade Anonima de Rsponsabilidade Limitada, SA)와 유한책임회사(Private limited liability company by quotas- Sociedades por Quotas, SQ)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최근 회사법 개정으로 주식회사 설립 시에 최소자본금의 요구 조항이 사라졌다. 그렇지만 여전히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자본금은 주식회사가 수행할 사업에 적합할 정도의 금원이 돼야 하는 제한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3인의 주주가 필요하고 설립 시 수권자본금 중 최소 25%의 자본금을 납입해야 한다. 현금출자나 현물출자 모두 가능하고, 정관에 주식양도에 따른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규정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주식양도에 있어 제한이 없다. 주식회사의 기관으로는 주주총회, 이사회 그리고 감독위원회(또는 감사)가 요구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와 감독위원회의 구성원을 선임한다. 이사회는 홀수의 구성원으로 조직돼야 하고, 소규모의 회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1인의 이사만을 둘 수 있다. 법인 이사의 경우 자연인인 대표자를 지정해야 하고 감독위원회는 3인 또는 5인의 구성원으로 조직돼야 하고 회사의 행위를 감독할 책임을 부담한다. 1인의 감사만을 둘 수 있지만, 그 자격은 회계사나 회계법인에 국한된다.

유한책임회사는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회사 유형이다.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 30인 이하의 주주가 필요하다. 물론 1인의 유한책임회사 설립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는 1인 회사라는 취지로 "unipessoal"이란 표현이 회사 이름에 덧붙여져야 한다. 최소자본금으로 20,000 metical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 자본금이 사업을 하는데 적정한 규모이어야 한다. 주주의 최소 출자 단위는 500 메티칼로 돼 있지만, 출자규모에 대해서는 주주 간 합의로 결정된다. 주주의 출자비율이나 출자금액은 명부에 기재돼야 하고 출자지분의 양도는 서면으로 이뤄져야 한다.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해서는 정관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다른 주주의 우선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유한책임회사의 기관으로는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있어야 하지만, 감독위원회는 주식회사와 달리 임의기관이다. 소규모나 비공개의 회사를 원하는 경우 비교적 설립 절차가 간이하고 감독이 적은 유한책임회사가 적합하다. 유한책임회사의 특징 중 하나는 주주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주주와 연대하여 회사에 대한 출자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주식회사는 보다 복잡한 행정절차 내지 감독절차의 구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복잡한 사업을 위한 구조로 적합하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는 많은 수의 주주들이 출자할 때 필요로 하고 고객들에 대한 마케팅 관점에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회사라는 측면에서 적합한 회사 유형이다. 주식회사를 선택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기명 주식의 발행을 통해 주주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의 이름이 정관이나 상업등기소에 기재돼 공시되기 때문에 그러한 익명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주식회사가 원유가스의 프로젝트에 보다 적합한 회사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모잠비크 세법 상 과세의 유, 불리의 관점에서 회사 유형을 살펴보면 두 회사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3-1-2. 자기자본

모잠비크 회사법에 의하면, 회사의 자기자본이 자본금의 50% 미만으로 잠식되는 경우, 이사회는 회사의 해산이나 자본감소를 제안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회사가 존립하려면 주주는 자본금에 이를 때까지 현금을 추가 납입해야 한다.

3-1-2. 프로젝트 회사의 국적의 제한

현행법에서는 외국 회사가 모잠비크 내에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지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사를 등록하여 운영하지 않는 이상, 통상부 장관의 프로젝트의 운영에 대한 승인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3-1-3. 회사 설립을 위한 소요 시간

회사를 설립하고 등록하는 데 들이는 소요 시간을 일률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개별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모잠비크 정부가 2012년까지 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회사 설립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여러 환경을 마련하고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 노력으로 인해 현재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할 경우, 회사 설립과 등록에 약 1개월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

3-1-4. 회사 설립 비용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통상부, 상업등기소, 공증사무소, 공보 등에 각종의 수수료와 비용이 드는데, 그 규모는 보통 자본금의 크기와 정관의 내용 과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회사를 설립할 때 미리 예상비용에 대한 견적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3-2. 회사의 주요 문제

3-2-1. 대여 행위와 담보의 제공

모잠비크 회사법에서는 회사가 대여행위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데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원유가스의 프로젝트를 운영함에 있어 자금을 대여할 필요가 있거나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 문제가 없다. 그러나 특별법에 의해서 일정 범위의 제한이 있을 수 있는 건 별론으로 한다.

3-2-2. 배당금의 지급

배당금 지급은 다음의 경우에 제한이 있다. 우선 전년도의 손실이 현존하는 한 이를 회복하지 않고는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 그리고

법정 준비금이 모두 충당된 이후에만 배당금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회사수익, 배당가능금액, 배당총액을 사전에 정하여 승인하여야만 배당을 할 수 있다.

4. 보험

4-1. 강제보험

모잠비크 현행법에서 여러 보험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환경보험, 산재보상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강제보험에 해당하고 회사는 이에 가입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4-2. 보험 관련 제한사항

일반적으로 모잠비크 보험 관련 법령에 의하면, 모잠비크 보험회사나 재보험회사 또는 모잠비크 내 등록한 지점이 있는 외국 보험사만이 모잠비크 내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다. 물론 이들 보험회사들은 보험영업을 영위하기 위해 재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보험감독원에 등록도 해야 한다.

또한 보험법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외국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감독원의 승인 하에 외국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첫째 국내 보험사들이 보험가입을 거절한 경우이고, 둘째 해외보험사가 국내보험사들보다 더 나은 조건의 보험을 제안한 경우이다.

4-3. 담보의 제공

원칙적으로 보험법에서는 보험과 재보험 상의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금지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제한이

따를 수 있다. 우선 보험계약 양도행위에 의한 담보제공 등에 대해 감독기관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둘째 비거주자에 대한 대금지급이 요구되는 경우 외환 담당 기관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5. 노사문제

5-1. 노사 관련 법령 및 규제

일반적으로 외국 노동자들은 모잠비크 노동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모잠비크 내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다. 사용자는 모잠비크 회사뿐만 아니라 외국회사의 모잠비크 지점도 될 수 있다. 다음의 규제 사항들에 대해서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

5-1-1. 총량 규제

사용자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외국인을 노동부에 단순통지를 함으로써 고용할 수 있는데, 근로자 총수에 따라 달리 정해진다.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근로자 총수의 5%를 고용할 수 있고, 1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보유한 회사는 근로자 총수의 8%를,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는 10%까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관련 지방 노동부서에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신고해야 하는데, 외국 노동자 총량 규제에 따라 그 비율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와 더불어 필요로 하는 회사와 근로자 관련 서류들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5-1-2. 사전 허가

사용자가 외국인 채용 비율을 초과하여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여부는 사안별로 장관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지만, 적합한 자격의 모잠비크 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을 먼저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

5-1-3. 단기취업

외국인 고용 관련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모잠비크 국내에서 30일까지 체류하면서 근로할 수 있고, 최장 90일 동안 갱신하여 체류하면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단기취업의 경우 총량 규제를 받지 않고 노동부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관련 지방 노동 부서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5-1-4. 투자 프로젝트의 예외

투자진흥청에서 적법하게 승인한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총량의 비율을 달리하여 외국인을 더 고용할 수 있고, 외국인 고용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 고용 절차가 간이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사용자는 노동 관서에 관련 투자 프로젝트의 허가 조건과 더불어 고용할 외국인의 규모와 별도로 승인된 고용조건을 신고함으로써 외국인을 용이하게 고용할 수 있다.

앞서의 절차에 따른 허가를 받고 고용하지 않는 한 외국인의 근로는 불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노동부서의 조사에 의해 위법이 적발되면 외국인의 근로는 즉시 중단돼야 하고 사용자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중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가 모잠비크 내에서 더 이상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외국인 근로자를 국외 추방할 수도 있다.

5-2. 외국인 근로 범위의 제한

2007년 8월 1일 자의 노동법(Law No. 23/2007)에 따르면, 사용자는 모잠비크 근로자에게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근로에 종사할 수 있는 지위와 관리업무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내국 근로자의 근로 범위에 한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6. 인·허가 등

6-1. 서설

프로젝트 회사가 모잠비크 내에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인·허가를 관련 행정부로부터 취득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해 유념할 필요가 있다.

6-2. 영업 허가

모잠비크 회사법에 따르면, 모잠비크 내에서 상행위를 하려는 자는 통상부 장관으로부터 영업허가 또는 산업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6-3. 환경 허가

회사의 사업 내용이 환경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환경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환경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가 요구된다.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 서류들을 함께 제출하여 평가를 받아야만 환경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환경 허가는 프로젝트에서 필요로 하는 다른 모든 허가보다 우선해서 취득해야 한다.

6-4. 행정법원 사증

모잠비크에서는 탐사개발계약이 효력을 발하고 강제이행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행정법원의 사증이 별도로 요구된다.

7. 금융

7-1. 회사에 의한 보증 및 담보의 제공

회사가 다른 프로젝트 회사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하기 위해 금융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함에 있어 아무런 제한이 없다.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회사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프로젝트 회사의 사촌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서도 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물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프로젝트 회사가 탐사개발권을 취득하거나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자금 능력이 있음을 요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7-2. 대여행위의 제한

현행법은 대주은행들이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에 대해 제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대주은행이나 담보대리인으로 하여금 등록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외환 관리의 목적 상 대여행위는 모잠비크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과 등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7-3. 배당금 송금의 제한

배당금의 송금에 대해서도 법령 상 특별한 제한이 없다. 다만 배당금의 송금이 합법적이어야 하고,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

고, 세금을 완납해야 하며, 모잠비크 중앙은행의 송금에 대한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

7-4. 환전

외환 규정에 의하면, 환전도 외환거래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모잠비크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과 등록을 요구한다. 더욱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 회사가 모잠비크 중앙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유용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은행 잔고를 환전하여 외국에 송금하는 데 제한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7-5. 외환 등록과 승인

비거주자가 탐사개발계약의 당사자인 경우, 관련 계약과 투자 프로젝트는 재정부의 사전승인뿐만 아니라 모잠비크 중앙은행에 의해서도 외환관리 차원의 등록과 승인을 요구한다. 그와 같은 승인 신청은 모잠비크 중앙은행에 해야 되는데, 당사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상업은행 등의 금융 중개인을 통해 할 수도 있다. 신청서에는 프로젝트의 법적, 경제적 모든 내용에 대한 정보와 증빙자료를 덧붙여야 함은 물론, 당사자의 신원, 프로젝트의 경제적 가치 등도 포함해야 한다. 모잠비크 중앙은행은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5일 내로 승인 여부를 판단해 준다.

7-6. 이자 지급

모잠비크에서는 복리 이자를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대출계약에서도 종종 관련 특별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모잠비크 민법에 의하면, 복리 이자에 대한 집행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자 지급 시기가 도래할 때 당사자 간에 별개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법원에 이에 대한 통지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외국 회사와 외국 은행 사이에 체결된 대출계약의 경우에도, 이자 관련 규

정은 모잠비크 중앙은행의 대출조건에 부합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8. 조세

8-1. 일반

모잠비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제가 통합돼 일원화된 제도로 운용되고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로 이뤄져있고, 소득과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직접세와 지출이나 소비에 부과하는 부가세 등의 간접세로 이뤄져 있다. 법인세율은 32%이고 개인 소득세는 거주자나 모잠비크에서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32%의 세율로 부과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모잠비크 내에서 이뤄지는 재화와 용역의 매매와 재화의 수입과 관련해 이뤄지는데 세율이 17%에 이른다. 특별소비세의 경우 원자재에 대해서는 2.5%, 자본재에 대해서는 5%, 중간재는 7.5%, 소비재는 20%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갖춰져 있어 총급여의 7%를 사회보장비 명목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그 중 4%를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

8-2. 원천징수

프로젝트 회사가 대주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와 수수료, 채무 원금의 지급, 계약 상 금원의 지급 등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 문제가 발생한다. 모잠비크와 대주은행의 국가 사이에 체결된 이중과세방지조약에 달리 규정돼 있지 않는 한, 이자와 수수료 모두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8-3. 이중과세방지조약

현재 모잠비크와 사이에 이중방지과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로는 포르

투갈, 마카오, 남아프리카, 이탈리아, 아랍에미리트, 마우리티우스 등이 있다.

8-4. 대주은행의 납세의무

원칙적으로 외국의 대주은행들은 모잠비크 내 지점 등을 둘 필요가 없으므로 모잠비크 국내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인세 목적의 고정사업장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고정시설이나 영구적 대표사무소 등을 통하여 비거주자 회사가 영리행위 또는 사업 활동, 영농 활동 등을 모잠비크 내에서 영위하게 되면 고정사업장이 인정돼 법인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고정사업장을 가진 외국 회사는 과세 목적의 등록을 해야 하고, 단일의 과세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또한 고정사업장을 가진 회사는 체계화된 회계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세무 신고를 하여야 하며, 법인세를 직접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한다.

8-5. 인지세

금융과 담보 계약, 회사 문서, 권리양도 문서 등은 인지세의 부담이 있다. 인지세율은 거래의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관련 문서나 서류 등의 법적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9. 담보설정 및 담보의 실행

9-1. 담보 개관

회사의 자산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하는 데 있어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그러나 프로젝트 계약이나 일정 권리나 자산의 양도의 경우 관련 부서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므로 이를 유념할 필요가 있고, 토지사용권과 같은 권리 등은 담보 목적의 양도가 금지돼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므로 개별 사안별로 담보권 설정 가능성 등을 살펴야 할 것이다.

9-2. 주식담보

모잠비크 회사법에서는 주식담보를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주식담보를 실행하고자 할 때 모잠비크 법령이 적용됨은 물론이다.

9-3. 담보 제공

모잠비크 회사법에 의하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회사는 채무자로서 또는 보증인으로서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계속적인 대출에 대해서는 증감하는 대출금액의 이행을 위한 근담보 설정도 가능하다.

9-4. 담보대리인 내지 담보수탁인

모잠비크 법에서는 담보대리인 내지 담보수탁인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위임장 수여 방식에 의하여 일정한 자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또한 대주은행의 권리 양도도 가능할 수 있지만 모잠비크 중앙은행의 승인이나 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물론 원유가스 탐사개발권을 부여하는 계약에서 담보 목적의 권리양도를 제한할 수 있고, 금융계약 자체에서도 일정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9-5. 정부 보증

모잠비크 민사소송법은 정부가 보증을 제공하는 데 있어 일정 제한을 두고 있다. 특히 일정 자산이나 권리에 대한 담보 제공을 금하고 있다. 더욱이 모잠비크 정부는 세계은행과 사이에 맺은 계약 상의 담보금지 규정(negative pledge provisions)에 의해 정부 보증을 하는

경우 세계은행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9-6. 담보권의 등기 및 우선순위

담보권은 등기에 의해 보호되고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물론 국가나 지방정부의 권리가 담보권에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 모잠비크 상법에는 담보권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 이를 작성하는 회사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담보권의 종류에 따라 달리 등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즉 토지 등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소에 등기해야 하고, 주식 등에 대하여는 상업등기소에 등기를 하여 보호를 받아야 한다.

9-7. 담보권의 실행

일반적으로 담보권 실행에 어떤 제한은 없다. 그러나 담보권 실행으로 인해 양도되는 권리가 탐사개발권과 같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정부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담보권 실행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담보권 실행으로 자산이 해외로 반출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모잠비크 중앙은행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담보권 실행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 책임에 대해서도 부담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10. 토지

10-1. 토지의 소유와 이용

토지를 비롯한 재산에 대한 권리는 모잠비크 헌법과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모잠비크 법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의 귀속시키고 있다. 프로젝트에서 필요로 하는 토지의 이용에 관하여는 토지법령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데, 프로젝트 사업자는 동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에 대한

권리(Land Use and Exploitation Right- Direito de Uso e Aproveitamento da Terra, DUAT)를 먼저 취득해야 한다. 그러므로 프로젝트 사업자는 토지 소유권을 전제로 한 처분, 담보제공 등이 불가능함을 유념해야 한다.

10-2. 부동산등기

모잠비크에는 부동산등기소가 있어 부동산의 권리를 공시하는 기능을 한다. 공시의 대상은 토지의 위치와 면적 등 토지에 대한 설명, 소유권, 담보 등 제한물권 등을 포함하고 있다. 토지이용권(DUAT) 역시 부동산등기소에 등기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토지이용권에 대한 담보 등의 처분행위는 모잠비크법 상 가능하지 않다. 그렇지만 토지 위에 건설한 건물은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담보 등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있고 이를 부동산등기소에 등기할 수 있다.

10-3. 토지이용권의 취득

비록 토지가 국가의 소유이지만, 토지이용권은 신청에 의해 취득할 수 있다. 토지 크기에 따라 토지이용권의 발급 기관이 달라지는데, 1000헥타르까지는 지방정부가 관할하고, 1000헥타르에서 10000헥타르까지는 농림부가 담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이용권은 내각위원회에서 관할한다. 토지이용권 발급에 대한 사용료는 토지 면적에 따라 매년 지급해야 한다. 토지이용 기간은 통상 50년이고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토지이용권은 발급 조건을 위반하거나 법령을 위반할 때 취소될 수 있고, 그 경우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이나 지상물 등은 국가에 귀속하게 된다.

11. 국제조약 및 중재

11-1. 국제조약

모잠비크는 포르투갈, 미국, 독일, 벨기에, 알제리, 쿠바, 덴마크, 이집트, 핀란드, 프랑스,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베트남, 인도, 스위스, 짐바브웨, 말라위, 중국 등과 양자간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하였고, 남아프리카개발기구(Southern Africa Development Community)의 회원국이고, 짐바브웨 및 말라위와 자유무역협정의 이전 단계에 해당하는 우호적 무역 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에너지협정(Energy Charter Treaty)의 당사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환경 관련해서는 2005년 교토협정에 서명한 바 있다.

11-2. 중재

11-2-1. 모잠비크 중재법

모잠비크 중재 및 조정법은 중재에 관한 주요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중재 판정소 구성과 절차, 언어 등에 대해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중재인 수가 홀수로 이뤄져야 하고, 중재 절차는 대심구조로 양당사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준다는 등의 제한이 있다.

11-2-2. 중재판정의 집행

모잠비크는 1998년 6월 뉴욕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Resolution No. 22/98). 그러므로 외국의 중재판정도 모잠비크에서 집행이 가능하다. 다만 집행을 위해 모잠비크 법원의 승인 절차를 필요로 한다.

12. 결론

원유가스의 탐사개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탐사개발권 관련 계약 내용에 대해 유의해야 하지만 더불어 자원보유국의 관련 법령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관련 법령들이 사업에 직, 간접적으로 적용됨으로 인해 사업의 위험성과 경제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원보유국의 관련 법령을 수집하여 연구하는 일은 탐사개발 사업 초기에 집중해야 하는 실사 내용 중 하나가 돼야 할 것입니다.

원유가스의 탐사개발 사업과 관련된 법령의 실사 범위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해당 국가의 법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헌법, 석유법, 회사법, 외국인투자법, 조세법, 금융법, 외환법, 노동법, 담보법, 토지법, 분쟁관련법 등을 실사 대상으로 손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련 법령들의 내용에 맞춰 탐사개발 사업의 구조를 짬으로써 사업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경제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잠비크의 원유가스 탐사개발 사업에 대한 위험성과 경제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관련 법령의 이해가 필요함은 물론이고 이에 따라 원유가스의 탐사개발 사업과 법령의 관련성을 토대로 대상 법령을 선정하였고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내용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다수의 관련 법령을 살펴봄으로 인해 구체적 내용을 보다 많이 담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 있다. 그렇지만 개략적으로나마 본고에서 살핀 법령 내용을 토대로 모잠비크 탐사개발 사업의 법령과 관련한 위험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짤 수 있길 기대해 본다.